결합건축 관리대장

(총3쪽 중 제1쪽)

Ⅰ. 개요

			대지간				
허가번호(명칭)	허가일자	위치(지번)	최단거리 (m)	성명	주소	생년월일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비고

건축협정체결자 변경 사항 (※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생년월일 란에 등록번호 기재)

위치(지번)	변경일자	당초	변경	위치(지 번)	변경일자	당초	변경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297mm×210mm[백상지(120g/m²)]

Ⅱ. 결합건축 내용

□ 대지별	용적률	적용에	대한	사항	(-1)
-------	-----	-----	----	----	-------	---

	용도지역(지구/구역)	법정 용적률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최종 허용 용적률
가 대지				
나 대지				

□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에 관한 사항 (II-2)

	위치 (도로명주소)	대지면적(m²)	건축면적(m²)	건폐율(%)	연면적 합계(m²)	연면적 합계(m²) (용적률 산정용)	용적률(%)	기타
가 대지								
나 대지								

Ⅲ. 결합건축 현황도

	주소	특이사항
가 대지		
나 대지		

도면의 종류	축 척	1: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